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3. 7.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24호로 2013년 6월 24일 김주범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국가에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망위로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개정함.(안 제10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나. 예산조치 : 2013년 6,000천원 예산반영

다. 타 구 제정 현황 : 서초구의 18개 자치구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사망위로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조정하여 시행함.
- 대한민국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본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려는 것임.

참고로 2013년 6월 현재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자치구는 19개구이며 지원금액은 동작구 등 6개구 15만원, 강서구 등 11개구 20만원, 서초구 등 2개구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국가보훈대상자의 연령층이 고령화되어 향후 지원대상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됨.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명)

연도	예산액	지원액	지원인원수
2011	20,000	4,200	21
2012	6,000	4,400	22
2013. 6	6,000	4,600	23

관 련 법 령

□ 「국가보훈 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